

2025년도 중소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품 수출기업과는 다른 **테크 서비스 기업**의 정책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특화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 **모집규모** : 150개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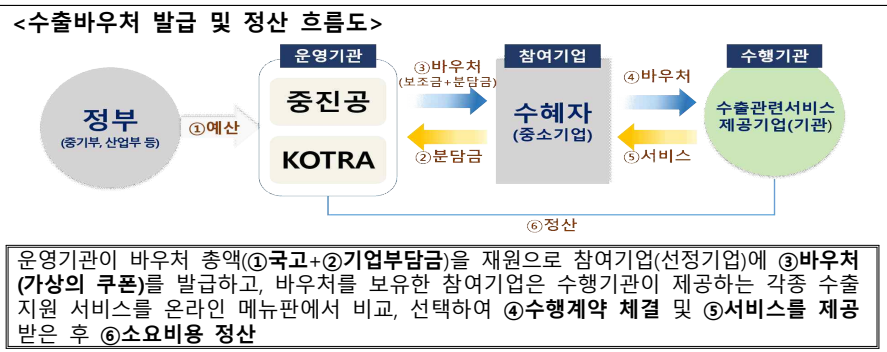
□ **모집기간** : 2025. 7. 24. ~ 2025. 8. 14. (3주)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70%)과 기업분담금(30%)으로 구성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디지털·AI 기술 단독 또는 융합된 혁신 기술 기반의 **테크 서비스 분야 기업**

※ 분야별 세부 분류 및 예시 : 별첨1 참조

【 테크 서비스 개념 및 유형 】

- (개념) 테크 서비스 = 디지털·AI 기술 단독 또는 분야별 전문 지식과 융합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

SW분야	솔루션 분야	콘텐츠 분야	ICT 융합형 분야
빅데이터, AI, SaaS, 메타버스, 블록체인, 플랫폼 등	보안솔루션,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엔지니어링, 기업관리솔루션 등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영상, 캐릭터, 음악 등	에듀테크, 스마트헬스케어, IoT제품, 핀테크 등

- (요건)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테크 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테크 서비스 분야 기업 해당 여부는 현장평가 시 확인

가. 최근 2년('23년 또는 '24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기준 테크서비스 분야 매출* 발생기업

* 상품, 제품매출 외의 매출로, 테크 서비스 분야 매출 해당 여부는 현장평가 시 확인

<업종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재무제표 미작성 기업	①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간이과세자 등 → 현장평가에서 확인
	② 제조·상품매출(100%) → 신청 제외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재무제표 작성 기업	③ 제조·상품매출 > 기타(서비스) → 신청 가능
	④ 제조·상품매출 < 기타(서비스) → 신청 가능
	⑤ 기타(서비스)매출(100%) → 신청 가능

나. 최근 2년('23년 또는 '24년) 재무제표 기준 제조·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23년 1월부터 '25년 신청일 현재까지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발생이 확인가능*한 기업

* 수출실적 증빙서류는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또는 서비스 수출계약서+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에 한하며, 그 외 서류는 인정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25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 최근 2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3.6.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70%미만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2년간)
	70%이상 ~ 85%미만	수출바우처사업 선정시 감점 5점(2년간)

-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테크 서비스 바우처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중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47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35백만원, 국고보조율 70%

* 바우처 최대 발급액 : 50백만원(국고보조금 35백만원, 기업분담금 15백만원)

□ 지원내용

- ①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와 ②일반 바우처로 구성된 바우처 지급
 - (전용 바우처) 특화 지원 서비스 활용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메뉴판]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해외 트래픽 발생여부 必, 인건비 성격이 강한 MSP 구축·유지 등은 제외)	사후정산 ※ 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 검토를 거쳐 정산
데이터센터 활용	■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기료, 트래픽 비용 등 전산자원 활용 비용 (해외 현지소재의 데이터센터 이용에 한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모바일 지원	■ 국가별 문화, 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	
기타 서비스	■ 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임을 승인받은 항목	

- (일반 바우처) 수출바우처 14개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상세 메뉴판 : 별첨2 참조

- (바우처 비율) 협약 시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전용 바우처와 일반 바우처 금액을 설정하되, 전용 바우처는 바우처 총 금액의 60% 이상 10% 단위로 설정

[바우처 발급 예시]

전체 바우처(A) (최대한도기준)	전용 바우처(B)	일반 바우처	전용 바우처 비율 (B/A)
50백만원 (자부담금 포함)	30백만원 (최소)	20백만원 (최대값)	60% (최소)
	35백만원	15백만원	70%
	40백만원	10백만원	80%
	45백만원	5백만원	90%
	50백만원 (최대)	-	-

※ 사업 협약체결 이후 전용 ↔ 일반 바우처 상호 비율 조정 불가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5. 7. 24(목) ~ '25. 8. 14(목) 17시까지

-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③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⑤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⑧	'23~'24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p.2 지원대상 요건 '나' 해당기업은 필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또는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中 택1	
선택 (희망시)	⑨	'23~'24년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⑩	'23~'24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⑪	'23~'24년 수출실적증명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운영기관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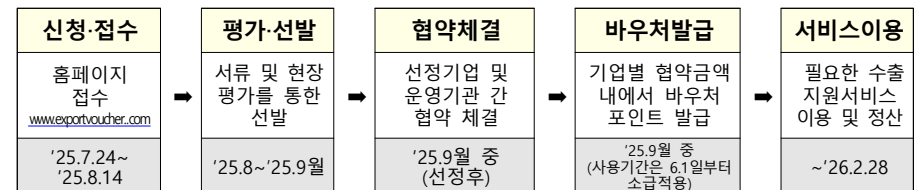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 지점 수출실적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원(⑧~⑪) 별도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시 원본 제출)
- (④~⑥) 인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인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메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을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또는 서비스수출계약서+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中 택 1
- (⑨~⑪) 기업평가 단계에서 수출실적 추가 인정 희망 시 제출
 - (⑨, 간접수출실적증명원) KTNET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서'만 인정하며, 구매확인서만 제출시 인정 불가
 - (⑩, 외국인도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시 인정
 - (⑪,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운영기관 조회 결과(무역통계진흥원) 보다 수출 실적이 많을 경우 유리한 실적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참여기업 선택에 따라 제출
 -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 기준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진행 절차



4. 평가개요

□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①서류평가 (자격 심사) 및 ②현장평가

* 현장평가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수출 역량 등을 평가

○ (평가기준) 기술경쟁력, 서비스 제공역량, 서비스 수출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평가가점

구 분	가 점 항 목	가 점
1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1
2	장애인 기업 또는 여성 기업	1
3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1
4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5	'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유효기업)	1
6	'24년 서비스 수출실적 보유기업 (필수서류®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실적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그 외 증빙은 불인정)	1

* 가점은 기업당 최대 6점까지 인정하며,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5. 기타 유의사항

□ 중기부, 산업부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동일·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 정산 등 사업비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보조금 환수, 제재 부가금(최대 5배)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가능

□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신청 제한

□ 기업분담금은 전용 바우처, 일반 바우처 각 1회씩 최대 2회 분납 가능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가능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사용금액이 협약액의 85% 미만인 경우 향후 2년간 제재 적용 (전용 바우처, 일반 바우처 각 사용률 적용)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수출바우처 참여제한(2년간)
70%이상 ~ 85%미만	▪ 수출바우처 신청 시 5점 감점(2년간)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신청단계 및 사업 종료 후 서비스 분야 수출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

* 수출 실적 제출 미이행 시 향후 2년간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청 시 5점 감점

□ 운영기관이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바우처) 정산 불가

□ 동일 법인이라도 선정기업의 바우처 이용만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불가)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제공되는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 의 처

구 분	전 화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d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별첨1

테크서비스 업종별 정의 및 예시

※ 아래 예시는 참고용이며, 테크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는 현장평가 시 최종 확인

분류 1	분류 2	서비스 수출 업종정의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 코드 예시
SW 분야	빅데이터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처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 빅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등
	AI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예측, 자동화를 수행하는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반 챗봇 서비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 및 계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계약 솔루션 제공 블록체인 기반 인증 및 추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

SW 분야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 교육 콘텐츠 플랫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기타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플랫폼에 포함되지 않지만, ICT 서비스 및 응용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거나 독립적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 데이터 유출 방지(DLP)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31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5822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보안 솔루션 (응용 서비스) 분야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디바이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 및 프로그래밍 툴 개발 ▪ 프로그래밍 협업 플랫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솔루션 (응용 서비스) 분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확장성 확보를 지원하는 도구와 플랫폼을 포함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 제공 ▪ 맞춤형 시장 리서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정보서비스업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제공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시스템 개발 ▪ CRM(고객관리) 플랫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
	기업관리 솔루션	기업의 운영, 자원 관리, 프로세스 최적화를 지원하는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 기반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 AR 애니메이션 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콘텐츠	애니메이션	ICT 기술을 활용하여 2D/3D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캐릭터, 스토리,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시청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감동을 전달하는 콘텐츠까지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OTT 플랫폼에 영화 배급 ▪ AI 기반 영화 편집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120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59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콘텐츠	게임	ICT 기술(VR, AR, 클라우드, AI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을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아이템 거래 게임 개발 	591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영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특수효과(VFX), 3D 렌더링, 클라우드 기반 편집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 시청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콘텐츠까지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버스 아바타 제작 3D 캐릭터 NFT 생성 및 거래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
	캐릭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 및 배포되는 디지털 이미지, 3D 모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AI 진단 시스템 및 원격 진료 솔루션 	5912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59114(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기술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기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설계, 계약, 감리, 시험운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ICT 융합 산업	ICT+산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5G 네트워크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교육, 의료, 금융, 제조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헬스케어 에듀테크 스마트 농업 스마트 제조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86909 (기타 보건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별첨2 수출bauer 메뉴판

구분	정의	내용(예시)	
테크 전용	클라우드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해외 트래픽 발생여부 필요. 단, 인건비 성격이 강한 MSP 구축·유지 등은 제외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활용 비용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기료, 트래픽 비용 등 전산자원 활용 비용. 단, 해외 현지 소재의 데이터센터 이용에 한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모바일 지원	국가별 문화·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
	기타 서비스	사전 심의를 거쳐 승인	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승인받은 항목
테크 일반	관세대응 (관세대응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 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 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 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해외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용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 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 제외)	
무역보험· 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 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INET ▶ 중진공과의 '융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 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공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자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공정보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고공에 관한 내역(고공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제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5. KI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등의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제공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의 기간별로 누적인 통계 ▶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I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공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평가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및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제납세증명(법인), 지방세납세증명(법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지방청·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시어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기부, 중진공, kotra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중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담당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사업목적·목표

사업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수출 확대 추진 * 000 국가(미국, 동남아 등) 시장 진출 및 고객확보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테크분야 ~~사용, 일반분야 ~~사용
목표시장 및 타겟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시장 : 000 - 타겟 고객 : B2B/B2C 기업, 정부기관, 현지 스타트업 등 - 목표 시장에 대한 현지화 수준 : 수출(예정)국가의 언어,
프로그램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비용 : 클라우드 이용 비용(월 100만원) - 국제운송비 사용 : 상품 배송을 위한 국제선사 이용 운임(500만원) * 첫페이지의 프로그램 이용계획과 일치하여야 함
바우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활용 후 서비스 수출 매출 증가 목표 000달러 - 신규 해외 바이어 및 파트너사 확보 00개사 이상 - 해외 인증 획득, 현지 진출 확대 등

다. 수출전략 및 실행 계획 *작성예시

해외시장 진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진출 : 현지 지사 설립 또는 직접판매 계획 - 파트너십 활용 : 현지 유통사 및 IT기업과 협업 - 기타 채널 활용 : 온라인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준비수준과 모니터링 제공여부 - 핵심 서비스 시장확장을 위한 준비 수준 - 핵심 서비스의 가격, 품질경쟁력 수준 - 시장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수준 등
마케팅 및 홍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마케팅 : SEO, 구글, 소셜 미디어 등 운영 -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 CES, Web서밋 등 글로벌 행사 참가 - 바이어 대상 POC : 해외 고객 대상 파일럿 테스트 운영 - 현지 언어 마케팅 자료 제작 : 현지진출 타겟국가 대상 자료 제작, 배포

라. 재무계획 및 기대효과 *작성예시

○ 향후 3개년 예상 매출액, 수출액 등 추이

구분	예상매출(억원)	예상 수출액 (달러)		고용창출(명)	
		제품	서비스	상시종업원	신규고용
2025년					
2026년					
2027년					

○ 해외마케팅 준비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

수출준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출인프라 구축 사항 - 서비스 수출 전담인력/조직 여부 - 해외시장정보 획득 여부/경로 - 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활동 노력 수준 - 해외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여부 - 기술출 여부 - 목표 시장에 대한 현지화 수준, 수출(예정)국가의 언어,문화 등을 고려한 개발 테스트 등 현황 등
향후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력 채용 : 현지 영입/ 마케팅 인력 확보 -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서버 확장, 보안강화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연구개발 수준 - 파트너십 확대 등

○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변동 : 환리스크 헷징, 해외 통화 예치금 확보 등 - 현지규제 : 현지 법무 컨설팅 진행 등 - 경쟁심화 :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등 - 기술유출 : 보안강화, 특허 출원 계획 등 - 리스크 예방(진출국 규제 등 관련 리스크 분석) 및 리스크 대응(메뉴얼, 프로세스 등 구비) 여부 등
---------------	------------------------------------------------------------------------------------------------------------------------------------------------------------------------------------------------------------------------------------------------------------